

제 호

#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

|     |          |  |
|-----|----------|--|
| 소유자 | ① 성명(명칭) |  |
|     | ② 주소     |  |

|           |  |
|-----------|--|
| ③ 이론자동차번호 |  |
|-----------|--|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④ 운행정지기간 | 년 월 일부터      년 월 일까지( 일간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위의 이론자동차에 대하여 [ ]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2항 후단 , 제52조 및  
[ ]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 전단  
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이론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합니다.

이  
호  
지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주 :

1. 이 명령서를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목적에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.
2. 이 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이륜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